신·구조문 대비표(하수도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3조 (공사시행)** ① ---------- 경우 ---------- 1. ---------- 경우 2. ----------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3. ---------- 신청 -----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경우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④ ---------- ---------- ----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 --- 건설산업기본법 ---------- ---------- ---------- ---------- ----------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 경우 -- 별지제1호 서식 -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경우 --- 법 ---------- ---------- ---------- ---------- ---------- ----------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3항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거창군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 ---------- 경우 ---------- ---------- ---------- 1. ---------- ---------- 경우 2. ---------- ---------- -- 경우 3. ---------- -- 경우 4. ---------- ---------- ---------- 경우 ②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경우---------- ②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업종별 하수도사용요율표에 의하고 업종구분은 별표3의 하수도사용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 별표 1에 ---------- 별표 3에 ----------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신고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 상수도 ---------- 상수도 ---------- ② ---------- 상수도 ---------- 1. ---- 제7조 또는 제8조의 ---------- 2. ---------- 제7조제1항제2호의 ---------- 3. ---------- 제7조제1항제3호의 ---------- ③ ---------- 상수도 ---------- 상수도 ----------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12조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경우 ----------
⑤ 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① ---------- 상수도 ---------- 상수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경우 ----------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점용료) ① 군수는 하수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5조 (점용료)** ① --------- 법 ---------- 경우 --별표 4의 ---------- ② ---------- 경우 ---------- 경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5의 ---------- 1. ---------- 경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가. 법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다. (현행과 같음)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가. ---------- 말한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나. ---------- 공사는 ----------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논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2) (현행과 같음)
(3) 공항의 건설사업	(3)~(5) (현행과 같음)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3. ---------- 경우 ---------- 가. (현행과 같음)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거창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신 설)	2.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신 설)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의 인허가 및 신고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납부는 시설물의 예정준공일자를 기준으로하며 실 준공일자에 따라 연기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 (가산금)** ---------- ---------- ---------- ---------- 경우 ---------- ---------- ------
제17조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경우 ---------- ----------
제19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권리·의무) 본 조례에 의한 권리 의무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삭 제)**
제21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 3일이내에 ---------- ----------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업종별 하수도사용요율표

업 종 별	사용량(톤)	요금(원)
가정용	0~10	68
	10초과~20	80
	20초과~30	92
	30초과~40	104
	40초과~50	118
	50초과~	130
업무용	0~20	78
	20초과~50	98
	50초과~100	120
	100초과~300	144
	300초과~	168
영업용	0~30	120
	30초과~50	142
	50초과~100	163
	100초과~500	185
	500초과~	206
욕탕2종	0~200	96
	200초과~500	113
	500초과~1,000	130
	1,000초과~	148
욕탕1종	0~200	169
	200초과~300	199
	300초과~500	229
	500초과~	260
산업용	1톤당	72
침출수동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	

개 정 안

【별표 1】 업종별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당단가(원)
가정용	1~20	94
	21~30	125
	31이상	167
일반용	1~30	110
	31~50	139
	51~100	169
	101~300	195
	300이상	242
대중탕용	1~200	120
	201~300	147
	301~500	172
	501이상	200
산업용	1톤당	10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3】 하수도업종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미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 사설소화전,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선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공설소화전 ◦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 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개 정 안

【별표2】 하수도업종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하수도 사용자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도 사용 업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구 분 내 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영업용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병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오피스텔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니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피혁 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 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도시계획사업의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거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일반용	
욕탕2종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체 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욕탕1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체 구분은 허가기준)	대중탕용	◦일반목욕장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주) 1.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2.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수도업종을 적용한다. 3.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3】 (현행과 같음)
【별표5】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4】 (현행과 같음)
【별표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신 설)**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 (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일) /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제7조제1항에 대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신 설)**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하수관거총사업비 × (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의계획하수량(㎥/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제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α : $(1 + \frac{\text{공공하수도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율}}{100})^{n}$ n : 공공하수도 설치 완료이후 경과 년수	【별표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 --- =㎥당 원인자부담금(원/㎥)×하수발생량(㎥/일) ※ ㎥당 원인자부담금 --- × (1 /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일)) × α ※ -------- 조례 제16조제1항에 ----- --- ※ ㎥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공고(공보) --- × (개발지역내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의계획하수량(㎥/일)) × α ※ ---------조례제16조제1항에------ --- α : $(1 + \frac{\text{공공하수도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율}}{100})^{n}$ ---
【별표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붙임 서식 참조)